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숙박시설 등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

■ 서범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867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사회취약계층에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3
2. 숙박시설 등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	10
3.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 변경 시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소급해서 강화된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 거 신설	2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범수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1. 26.

3. 회 부 일 : 2024. 11.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주택의 소유자로 하여금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숙박시설 등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별로 주택용소방시설의 보급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이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여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대응이 가능하여 화재의 초기 진압에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층수나 바닥면적이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최근 발생한 부천 숙박시설 화재와 같이 스프링클러설비 의무화 이전의 건축물은 의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취약계층에게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숙박시설 등 화재발생 시 피해가 큰 특정소방대상물에도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설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그 설치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임(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제1항 후단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사회취약계층에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독거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게 국가가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 ② (생략) <u><신설></u>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u> <u>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u> <u>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자</u> <u>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u>

③ (생략)	른 지원대상자 4. <u>독거노인 등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취약계층</u>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화재의 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관리와 관련한 현행 소방 관계 법령의 체계를 살펴보면,

특정소방대상물¹⁾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관한 내용은 이 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화재의 예방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대비·대응에 관한 내용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이에 따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방관서장에게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함)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23조제1항²⁾).

또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대상을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④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⑥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시행령 제24조제1항),

소방관서장이 이들에게 ①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개선, ② 소방시설등의 안전점검, ③ 소방용품의 제공, ④ 전기·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 ⑤ 그 밖에 화재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시행령 제24조제2항³⁾).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① 소방관서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독거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게 국가가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먼저, 화재예방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범위에 관해서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른 취약계층은 현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안전취약계층과 그 범위가 유사⁴⁾하다는 점과 화재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6.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소방관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개선
2. 소방시설등의 안전점검
3. 소방용품의 제공
4. 전기·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
5. 그 밖에 화재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원 근거는 현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개정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현행 소방관계 법령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계층의 범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비고(개정안 제10조제3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⁶⁾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자 ⁷⁾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⁹⁾	독거노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¹⁰⁾	-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

4) 개정안에 비해 현행 화재안전취약계층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포함하는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다만,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 비해 그 범위가 한정적이라고 보임.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

을 말한다.

제9조(수급자격 심의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치면 신청서, 조사결과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제5조에 따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 활동지원등급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 심의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한다.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2. 2. 1., 2014. 1. 21.>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9)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4.>

③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4., 2015. 12. 1.>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외국민의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그 밖에, 현행법에는 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일반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과(제3조제3항¹¹⁾)

소방시설의 설치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해당 시설의 소관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방청의 의견이 있음¹²⁾.

1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와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소방 기술·기준의 개발 및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2) 소방청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18.1월)를 계기로 기존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소급해서 설치하였고 당시 일부 대상에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함. 구체적으로 소급 관련 법적 근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라목을 신설하여 마련하였고, 관련 예산확보 및 추진현황 관리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이라고 밝힘.

다만, 소급 설치 대상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오래된 건축물에 입점하고 있어 스프링클러를 설치시 스프링클러 설치비용 외에 건축물 구조 등을 추가로 공사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건물주 반대로 스프링클러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외에도 공사기간 동안 진료가 어려워, 의료기관은 설치비용 외에 수입 감소라는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적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소방청은 설명함.

2. 숙박시설 등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

개정안은 숙박시설 등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며(안 제12조제1항 후단 및 부칙 제3조),

개정안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주택·숙박시설 및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는 사람에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

설) ① · ② (생략)

<신설>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에 소방시설 중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는 사람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

-----, 이 경우 숙박시설 등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중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할 때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폐쇄·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 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
제1항 및 제2항에-----

-----.

④ -----
제1항 및 제2항에-----

-----.

⑤ -----제4항-----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5항에 따른 작동정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생략)

<신설>

제54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관계인

-----.

⑥ -----

-----제1항 및 제2항에-

-----.

⑦ -----

-----제6항에-----

-----.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후단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① -----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등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2. ~ 6. (생략)

② (생략)

제5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3. (생략)

② ~ ④ (생략)

제56조(벌칙) ① 제12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

-----.

1. 제12조제3항에-----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

-----.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 제12조제4항을-----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6조(벌칙) ① 제12조제4항----

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6항, 제37조제7항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 9. (생략) 제6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2. ~ 15. (생략) ② (생략)	----- ----- -----.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벌칙) ----- ----- -----. 1. 제12조제3항----- ----- ----- ----- 2. ~ 9. (현행과 같음) 제61조(과태료) ① ----- ----- ----- -----.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 ----- 2. ~ 1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제3조(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
---	--

	시 숙박시설 등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관계인은 제1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¹³⁾의 관계인¹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¹⁵⁾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하고(제12조제1항), 현행법 시행령 [별표 2] 및 [별표 4]에서 각각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음.

13) 관련 조문은 각주 1) 참조

14)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1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성능기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나. 기술기준: 가목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

이에 따르면 호텔, 여관 등은 숙박시설¹⁶⁾로 분류되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므로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숙박시설은 그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함.

예를 들면, 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발생에 따른 온도상승으로 헤드가 개방되어 자동으로 물이 분사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초기 소화에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층수가 6층 이상이거나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숙박업소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600㎡인 숙박업소는 모든 층에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어야 함.

1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13. 숙박시설

가. 일반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나. 생활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다. 고시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숙박업소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

구분	시설명	설치기준
1. 소화설비	1)소화기구	연면적 33㎡ 이상인 것
	2)옥내소화전설비	연면적 1천5백㎡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3)스프링클러설비	❶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❷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은 모든 층 ❸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
	4)간이스프링클러설비	❶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600㎡ 는 모든 층 ❷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
	5)옥외소화전설비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 이상인 것
2. 경보설비	1)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것
	2)비상방송설비	❶ 연면적 3천5백㎡ 이상인 것 ❷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❸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3)누전경보기	계약전류용량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경우
	4)자동화재탐지설비	연면적 600㎡ 이상인 것
	5)자동화재속보설비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6)단독경보형 감지기	연면적 600㎡ 미만의 숙박시설
	7)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숙박시설
	8)가스누설경보기	가스시설이 설치된 숙박시설
3. 피난구조설비	1)피난기구	모든 층(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 제외)
	2)인명구조기구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3)유도등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4)비상조명등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인 것
	5)휴대용 비상조명등	모든 숙박시설

4. 소화 용수 설비	1)상수도소화용수 설비	연면적 5천㎡ 이상인 것
5. 소화 활동 설비	1)제연설비	❶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 ❷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2)연결송수관설비	❶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 이상인 것 ❷ ❶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❸ ❶ 및 ❷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3)연결살수설비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것
	4)비상콘센트설비	❶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❷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5)무선통신보조 설비	❶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❷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자료: 소방청)

그동안 스프링클러시설 설치와 관련한 현행 법령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1968년에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으로 바닥면적이 1,5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기준이 도입되었고,

이후 1981년에 여관·호텔·여인숙으로 11층 이상의 부분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1984년에는 11층 이상의 여관 호텔은 전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2004년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2017년에는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2022년에는 숙박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m²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도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요건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음.

<숙박업소의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변경 현황>

시행일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비 고
1968.01.15.	❖ 소방법 시행령 ▶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으로 바닥면적 1,500㎡ 이상	설치기준 도 입
1981.11.06.	❖ 소방법 시행령 ▶ 여관·호텔 또는 여인숙으로 11층 이상의 부분	
1984.07.01.	❖ 소방법 시행령 ▶ 11층 이상의 소방대상물로서 여관 또는 호텔의 용도로 사용되는 소방대상물은 전층	
2004.05.30.	❖ 소방시설 및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전층	4분법
2017.01.28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의정부 아파트화재
2022.12.0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 숙박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현행기준

(자료: 소방청)

개정안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① 숙박시설과 ② 그 밖에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되, 개정안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새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고,

주택, 숙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기금으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것임.

현재 숙박업소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곳은 전체 숙박업소의 9.6%에 불과하다는 점¹⁷⁾, 소방청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숙박시설, 의료시설, 공장, 공동주택은 화재 시 위험도가 가장 높은 5등급으로 분류된다는 점¹⁸⁾, 최근 5년간 숙박시설 화재는 총 1,843건 발생하였고 32명이 사망하고 355명이 부상하였으며 약 20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상당하다는 점, 스프링클러가 초기 소화에 효과적이라는 점¹⁹⁾ 등을 고려할 때 숙박시설 등의 특정소방대상물

17) 소방청에 따르면 전체 숙박시설은 28,029개이고, 이 중 11층 이상인 숙박시설은 2,707개임.

18) <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화재위험평가 결과표’ >

평가등급	대 상 물
5등급	■ 숙박시설, 의료시설, 공장, 공동주택
4등급	■ 판매 및 영업시설, 복합건축물,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3등급	■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동·식물원), 자원순환시설, 운수자동차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창고시설
2등급	■ 지하구, 교정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관광휴게시설, 방송통신시설, 동물·식물 관련 시설, 지하가
1등급	■ 문화재, 업무시설

※ 자료 : 인명안전기준을 반영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소방청 연구용역 자료('18.10월)

19) 관련기사: 중앙일보, 숙박업소 화재 연300건... “스프링클러 의무화 화대 필요”, 2024.8.25.

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보임.

<최근 5년간 숙박시설 화재 발생 현황>

연도	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천원)
		사망(명)	부상(명)	
계	1,843	32	355	20,816,435
2019	365	10	113	3,301,706
2020	344	10	53	2,946,468
2021	375	7	55	4,548,915
2022	382	2	78	4,049,224
2023	377	3	56	5,970,122

(자료: 소방청)

<숙박업소 중 스프링클러/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전체 숙박시설 수(A)	11층 이상인 숙박시설(B)	B/A(%)
28,029개	2,707개	9.6%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22.12.1이후 300㎡이상 600㎡이하의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된 대상물에만 적용되어 거의 설치되지 않음.

(자료: 소방청)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필요한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존 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살펴보면, 소방청은 기존 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는데 약 2조 2,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의 숙박시설은 그 규모 면에서 영세한 곳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 개정안들의 입법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가능한 예산의 확보 여부 및 해당 시설 관계자의 자부담 비용 발생 시 이에 대한 관계자의 수용 가능성의 정도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스프링클러 및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단가 등 소요예산>

□ 산출내역

구분	스프링클러 (1,000m ²)		간이 스프링클러 (1,000m ²)	
	신축	소급	신축	소급
공사비용	7만원/m ²	9만원/m ²	4.5만원/m ²	6만원/m ²
공사기간 (1,000m ² 기준)	8일	15일	5일	10일
공사방법	전층공사	층별, 실별 부분공사	전층공사	층별, 실별 부분공사

□ 기타사항

- **(공사비용)** 견적금액으로 산정 ※ 공사계약 시 실행가는 낮아질 수 있음
- **(공사기간)** 천장 내부구조 및 특성에 따라 공사기간 변동 가능
- **(공사방법)** 공사구간을 층별로 구획하여 숙박업 영업에 차질 최소화

□ 숙박시설 S/P 소급 시 설치비용

- S/P 설치비용 : 1,000m² 기준 9천만원 (의료시설 소급 시 단가 기준)
- S/P 설치대상수 : 약 25,000개*
- * 전체 숙박시설(28,029개) - 11층 이상 숙박시설(2,707개) (예방정보시스템 기준)
- 소급비용 : 약 2조 2천 5백억원 (25,000개 × 9천만원)

(자료: 소방청)

소방청은 소방시설 설치 관련 요건 변경은 사회적 의견 수렴, 관련 예산 반영 가능성 등의 검토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²⁰⁾, 현행법령에서는 소방시설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도 마련되어 있으나(제3조제3항²¹⁾), 소방시설의 설치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해당 시설 소관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힘²²⁾.

기획재정부는 소방시설의 설치는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택 관계인(소유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20)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모든 숙박시설로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4를 개정하면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관계 부처의 협의를 통한 관련 예산 확보와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소방청은 밝힘.

소방청은 기존 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 호텔, 콘도미니엄은 「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보건복지부) 등에서 그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와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소방 기술·기준의 개발 및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2) 소방청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18.1월)를 계기로 기존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소급해서 설치하였고 당시 일부 대상에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함. 구체적으로 소급 관련 법적 근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라목을 신설하여 마련하였고, 관련 예산확보 및 추진현황 관리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이라고 밝힘.

다만, 소급 설치 대상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오래된 건축물에 입점하고 있어 스프링클러를 설치시 스프링클러 설치비용 외에 건축물 구조 등을 추가로 공사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건물주 반대로 스프링클러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외에도 공사기간 동안 진료가 어려워, 의료기관은 설치비용 외에 수입 감소라는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적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소방청은 설명함.

서, 현행법에서도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에 따라 자부담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관계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행정안전부는 주택²³⁾, 숙박시설 등에 스프링클러설비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① 재난관리기금²⁴⁾은 공공분야 재난관리활동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에 지원이 가능하고 민간시설에는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1호 및 제2호²⁵⁾)²⁶⁾, ②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주택 등

23) <법 제1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 현황>

구분	합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동수	443,387	151,947	36,238	251,389	3,813

(자료: 소방청)

24) 재난관리기금 개요 및 재난관리기금 기금규모는 [참고 2], [참고 3] 참조

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내용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 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26) 다만, 예외적으로 ①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또는 ②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시설에 지원 가능함. 그러나 이 경우에도 조치 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비용을 징수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4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시설의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
 3.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3.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 변경 시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소급해서 강화된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개정안은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및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u>제12조제1항 전단에</u>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 ---- <u>제12조제1항에</u> ----- ----- ----- ----- ----- ----- ----- ----- ----- ----- -----

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 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 을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 으로 정하는 것 가. ~ 마. (생략) <신설> 2. (생략) ②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 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는 제12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 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략) ⑤ (생략)	----- ----- -----. 1. ----- -----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u>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 스프링클러설비</u>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제12조제1항에도 ----- ----- -----. 1. ~ 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부칙 제2조(소방시설 기준에 관한 적용 례)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정 또는 시행 되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기준부터 적용한다.
---	--

현행법은 소방시설 설치의무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부여하고 있고(제12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나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내용을 적용하도록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조문을 두고 있는데(제13조제1항 본문)²⁷⁾,

이는 건축 당시 적법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한 경우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그 적법성을 인정하여 신뢰보호와 법적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은 예외적으로 소화기구, 비상경보장치, 자동화재탐지설

27) - 동 특례조항은 이 법 제정당시부터 존재하였음.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 2004.5.30.] [법률 제6895호, 2003.5.29., 제정]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등에 대하여는 변경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
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분무소화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3.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에 관해서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제13조제1항 단서 및 각 호),

이들 설비는 소방시설 중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는 소방시설로 소급하여 적용하더라도 건축물 구조, 인테리어 등을 크게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이 있음.

개정안은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와 관련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화재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보임.

다만, 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소방시설 및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설치 비용 및 설치 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소방청은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위해서는 1㎡당 9만원,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비용은 1㎡당 6만원 정도 소요되는데²⁸⁾ 영업주의

28) (예시)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단가는 9만원/㎡으로 30평 기준(30평×3.3㎡×9만원) 891만원 소요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단가는 6만원/㎡으로 30평 기준(30평×3.3㎡×6만원) 594만원 소요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개보수, 장기 휴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이 우려되며, 임차인의 경우 사후 철거 문제 등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소방청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16톤 이상의 수조 및 펌프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이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천장 철거 및 배관 추가 설치 시 층고가 낮아지는 등 여러 사유로 스프링클러 설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함.

문 의 처
02)6788-5351

참고 1

화재안전취약자 현황

(자료: 소방청)

[1] 법적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2] 화재안전취약자 현황

□ 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기초생활 + 차상위계층 수급자(명))

계			기초생활			차상위		
소계	남	여	소계	일반	시설	소계	남	여
2,359,228	1,046,016	1,313,212	2,451,458	2,359,228	92,230	187,838	68,131	119,707

□ 2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장애 분류·성별 현황(명)

총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합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2,641,896	1,529,806	1,112,090	978,634	584,195	394,439	1,663,262	945,611	717,651

- 장애 유형별 현황(명)

합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2,641,896	1,153,501	248,360	432,854	22,830	229,780	240,546	42,744	104,197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108,623	4,933	11,029	15,634	2,757	17,117		6,991

- 장애 유형별 심한 장애인 현황(명)

합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978,634	222,833	45,806	85,694	11,468	229,780	136,925	42,744	102,722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80,961	3,661	10,487	660	1,375	1,613		1,905

- 장애 유형별 심하지 않은 장애인 현황(명)

합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1,663,262	930,668	202,554	347,160	11,362	0	103,621	0	1,475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7,662	1,272	542	14,974	1,382	15,504		5,086

□ 3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한부모 가족 현황(명)

합계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모자 가족	청소년부자 가족
484,180	384,939	92,679	3,222	3,071	269

□ 4호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구분	합계	65세~69세	70세~74세	75세~79세	80세~84세	85세 이상
합계	2,918,722	896,925	621,589	510,679	461,037	428,492
남자	986,586	417,087	241,109	153,037	100,588	74,765
여자	1,932,136	479,838	380,480	357,642	360,449	353,727

□ 5호 「다문화가족지원」에 따른 다문화가족

- 유형별 다문화 가구원 현황(명)

계	한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	기타동거인
1,151,004	166,733	383,444	295,696	305,131

참고2

재난관리기금 개요

(자료: 행정안전부)

□ 재난관리기금 개요

-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68조
- **(사용용도)** 재난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모든활동
※ 세부용도는 재난법 시행령 74조를 준용하여 각 지자체별 조례로 지정·운영
- **(적립재원)** ^{최근 3년간}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관리주체)** 지방자치단체

□ 재난관리기금 용도

- **(공공분야)**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 관리 활동에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이 가능
 - 다만, ①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 후 확정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②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은 사용 불가
 - *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 없이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은 사용 가능,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집행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사용 가능
 - ** 단, 재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는 사용 가능
- **(민간분야)** 원칙적으로 지자체 외의 자가 소유·점유하는 시설의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의 충당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공중의 안전을 위해 아래 2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여 안전조치 가능

-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인 경우
- 소유·점유자가 불명확 혹은 명확하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또한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자체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에는 사용가능*,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 준용
 - * 기금 집행 전 퇴거 및 안전조치명령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우선적으로 고려

- **(특례)** 코로나-19 관련, ‘20년 호우·태풍 피해복구, ^{의사집단행동}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드는 비용은 기금 사용 가능(「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5조의2)

참고3

재난관리기금 기금 규모 및 수입·지출 내역 개요

(자료: 행정안전부)

(단위 : 백만원)

구분	당해연도 법정적립액* (수입액)	예산액**	집행액				잔액
			계	의사 집단 행동	코로나19	그 외 재난 관리	계
2021 (‘21.12.31. 기준)	749,164	3,620,069	1,667,312	-	1,241,772	425,540	1,952,757
2022 (‘22.12.31. 기준)	818,117	4,132,740	1,926,237	-	1,298,686*	627,551	2,206,503
2023 (‘23.12.31. 기준)	940,169	3,653,759	683,328	-	19,330	663,998	2,763,169
2024 (‘24.9.30. 기준)	1,032,144	4,041,086	720,113	46,562	954	672,597	3,320,973
2025	취 합 예 정						

*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예산액은 전년도까지의 누적액(의무예치금 포함) + 당해연도 적립액(법정적립액 이상도 가능)